신설법인 설립절차 및 유의사항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회계사
Mobile: 098-548-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2020 년 8 월 현재

본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영속적인 사업행위를 영위하는 한국투자자들이 아셔야 할 베트남내 신설법인에 필요한 순차적 세무업무절차 및 유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 신설직접투자설립은 지분인수를 통한 기존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매수행위와는 구별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외국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다양한 초기 세무신고절차 및 유의사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영업개시단계 및 영업중 발생하는 주요 세무이슈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법인설립신청 준비자료		설립전 창업비 지급구조 정립(역외계좌 개설을 통한 자회사의 자산 및 창업비성격 집행)	창업비는 설립법률자문료,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비용을 의미함. 설립전 미리 자산 구매는 가능.
부동산임차계약서	설립전 사전계약	회사발기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법정자본금 구성요소임을 주의(역외계좌통한 송금)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임차인의 지위 이전약정 필요.
설립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사업목적에 따라 DPI 에 신청	프로젝트 종류별로 신청서 요청자료 상이함.	경리장위탁 회계법인이나 고용경리장 기재 필요함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발행	투자프로젝트를 등록한 증서.	인민위원회나 공단위원회	총투자금=정관자본금+대여투자금(1 년이상 차입금/대여금으로서 한도내 차입 및 인출가능함)
법인등기부등본(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발행	신청후 3 영업일내 법인설립일 개시시점	DPI 로부터 수령. 창업완료이므로 창업비 만료되고 개업비나 신설법인 비용 계상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현지법인의상호,본점주소,법적 대표자,투자자(Member),정관 자본금 기재함. 아울러, VAT 공제방식을 선택해 ERC 신청해야 함.
인감작성 후 DPI 에 등록신청	ERC 발행후 즉시	Stamp 에 TAX CODE 번호 포함.	
DPI 가 인감사용허가서 발행 및 국가정보망에 등록		인감의 법적 유효개시일	
세무서 발행된 세금계약서 구입	고위험대상군 판정회사에 해당	공업단지외에 위치한 유통및 서비스사; 세적변경유경험자; 관계사 매출주력회사; 세무신고지연경력회사는 고위험대상군으로	12 개월간 사용 후 정상기업판명시에 E-invoice 로 전환가능.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세무서판정시에 해당함.	
E-invoice 제공사 선정 후 INVOICE 기재사항 준비	고위험대상군 판정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설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사용자이나, 세무서의 고위험군 사업자 판단이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함. 고위험군이면, 관할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세무서 발행된 세금계약서 구입하거나 관할세무서 identification code 수령받은 E invoice(Cir 미비상황임)	기재사항 1. Tax code 2. Company name in Vietnamese on ERC 3. Company address on ERC 4. Telephone (optional) 5. Bank account and bank name (optional but prefer to have this info on invoice) 6. 회사 Logo 7. Registered email used for sending E-invoice to clients
관할세무서에 E-INVOICE 사용통지서 제출 및 회사설립사항 FORM01 으로 신고서 제출	1, e- invoice 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2. e- invoice 사용통지서 제출 3.Form 01 을 부가세신고방식 및 회사인적사항 신고	Form 01 제출 후 2 영업일내 e-invoice 승낙여부 통보. 세무서의 사업장방문 실사가능함(사업장실재성, 회계시스템구축여부, 매출계약서,자본금완납, 매입 증명계약서, 사무실임차계약서 검토).	E-INVOICE 시스템제공자 명기; E-INVOICE 종류(VAT OR SALE INVOICE); 납세자정보(주소,사명); Tax code 정보기입
전자납세시스템 구입계약		전자납세시스템을 유료로 구매해서 전자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함.	
관할 세무서 E-			세금계산서 사용 통지를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invoice 사용통지			세무서에 수행후 실재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 일후임.
국세청 Homepage 등록사항 점검		회사정보와 사이트 정보 비교 확인.	수정은 form 08/MST 사용함.
법인 은행계좌 등록을 위한 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및 요구불예금계좌	거래은행과 합의 후 택스코드 발급전이면, 사후 세무코드 보완제출 필요	DICA 계좌엔 출자금 및 차입금 입금을 해야 함.
세무코드등록 및 부가세신고방식 신청	첫분기 부가세신고서 제출로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함.	부가세신고방식선택 (일반적으로 공제방식)	직접법으로 선택하면 매입부가세 불공제됨
세무서개시미팅 준비	고정자산 구입후 즉시	1.고정자산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신고등록(cir45/2013 에 의거) 2. ERC 신청시 미기재사항 추가제공(예컨대, Chief accountant 변경정보)	
DPI 에 회사 사용 은행계좌 등록	계좌개설시	은행계좌정보(2016 년 12 월이후 관할 DPI 에 등록해야 함)	
워크퍼밋, 비자신청	근무전 15 일이전에 워크퍼밋 신청 비자신청은 입국전에 신청이 원칙.	본사파견 주재원은 파견명령서 제출필요. 현채 외국인은 노동계약서 사전작성 후 신청함.	워크퍼밋(최장 2 년내에서 재신청가능함), 관광비자는 최장 3 개월. 상업비자 신청시에는 자회사의 초청장 필요함. 입국 후 워크퍼밋 및 비자신청도 가능.
사회보장보험등 등록(SHUI), 노동계약서 체결	채용시 및 보험신청시(DOLISA 라 칭하는 국가공적보험공단)	노동계약서 체결후 제출. 노동계약서는 2 개월이내의 수습계약서, 12 개월	외국인 본사파견 주재원은 사회보장보험 의무없음. 로컬직원포함 근로자의 첫달 근무일수 14 일 미만은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미만의 임시계약서, 1 년부터 3 년내의 유한기간계약서, 유한기간계약서를 연속 3 회시부터는 종신근무계약으로 간주됨. 2021 년부터는 3 년내의 유한기간계약과 무한계약으로 단순화됨.	SHUI 납무면제됨. 2021 년 1 월 1 부터 신규 노동법 적용됨.

- ***창업전 발생비용의 비용처리***

본사가 설립전 집행한 비용 중 인정된 자산/비용만이 자회사의 설립후에 자산/비용의 계상이 인정됩니다.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투자는 항상 자회사 설립전에는 역외계좌를 개설한 후 출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외계좌를 통한 입금이라도 베트남세법에 의거해 인정된 비용이 아니면 비용의 내용에 따라 창업비가 부인됩니다. 예컨대, 본사가 베트남 역외계좌를 통해 입금한 자금 여부와 무관하게 베트남내에서 집행한 출장경비, 대관비용, 각종 체재비는 설립후 자회사의 자산/비용이 계상되지 못합니다. 반면, 설립에 필수적인 선집행 비용인 법인설립법무비용, 본점소재지 부동산구입비용, 자회사의 자산구입비용은 자회사의 창업전비용이라 할 것입니다(역외계좌를 통한 집행 필요). 창업전비용은 본점소재지 부동산 임차 및 구입비용, 법인설립 법무비용이 해당하고, 설립전 선자산 구매액은 자회사의 자산으로 설립개시일에 등재됩니다.

- 창업비가 성립하는 토지대금 및 회사설립법률자문비용 또는 자회사의 자산등재가 가능한 자산구입비용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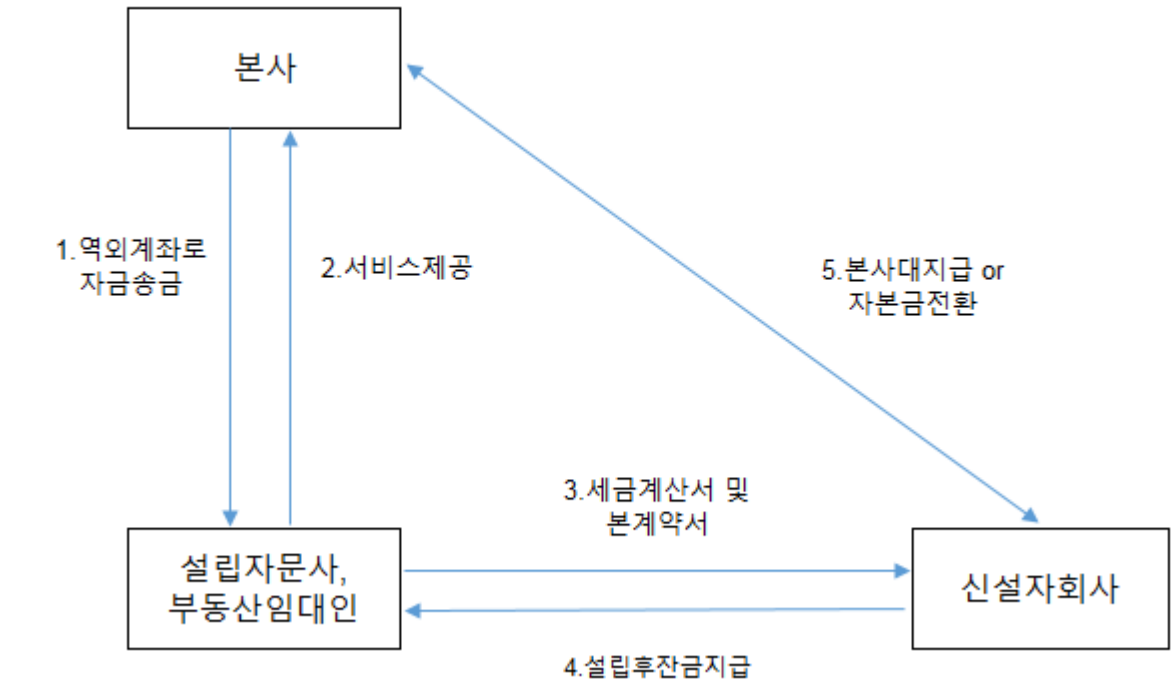

- ***법인형태별 필수기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투자자수	3 인이상	1 인이상
투자자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주주총회	2 인이상:사원총회(의장임명) 1 인투자자:대표이사
이사회	O(이사회 의장 임명)	의무아님
대표이사(legal representative)	이사회의장 또는 사장과 겸임가능	이사회의장 또는 사장과 겸임가능
사장(GENERAL DIRECTOR)	O(이사회의장/대표이사와 겸임가능)	O(사원총의의장/대표이사와 겸임가능)
감사	주주가 11 인 이상이거나 지분 50% 이상 보유한 법인인 주주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 필수 (그 외의 경우 이사회의 2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산하에 내부감사기구 설치)	1 인 유한회사: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감사 필수; 2 인 이상 유한회사: 투자자가 11 인 이상일 경우 감사위원회 필수 (그 외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불필요)
필수기관	주주총회, 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대표이사,감사(단, 개인소유주인 일인 유한책임회사는 대표이사,사장만)
세무상 보수의 비용인정	비용인정함.	1 인회사의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불인정함.
장점	상장을 위한 회사형태로 가능. 증자시, 주식할증(할인)발행 가능함.	설립이 용이함.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와 구성원수	5 년내 재임가능. 구성원은 3 명에서 11 명	n/a

- ***경리장 제도***

모든 외국법인은 베트남 accounting law 에 의거하여, 경리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리장을 채용하거나, accounting firm 으로서 MoF(Ministry of Finance)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기장대행 및 경리장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설립일 후 첫 일년간은 회사직원중에 경리관련 대학졸업자가 경리장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